

종합 토론

◆ 토론 자

김 재 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용 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장 진 훈 (서울제2중재부 중재부장)

김 상 우 (JTBC 보도부국장)

유 제 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 동 수 (MBN 사회2부 부장)

정 철 운 (미디어오늘 기자)

조 정 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 사 회 자

유 의 선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종 합 토 론

◆ 김 재 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인 개념의 모호성

공인에 관한 정의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론을 인용하려 해도 논란이 많고 미국 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유럽인권법원 등에서도 다른 판결이 나타납니다. 캐롤라인 공주 사건을 예로 들면, 독일 법원은 시대사적 인물이라 해서 사생활에 관한 보도를 넓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권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도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공익 개념에 관해서 나라마다 판단이 다름에 기인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미테랑 전 대통령의 부인에 관한 보도에서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한 바 있습니다. 다른 예로, 미국 거츠 판결에서 인권 변호사를 공인이 아닌 사인으로 취급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를 공적 존재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인에 관한 범주를 미국보다 넓게 인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공인을 명확히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인의 유형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차별적 접근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 사생활 보도의 허용 범위 설정을 위한 제안

공인의 사생활 공개 허용 범위 또한 문제입니다. 발제문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사생활을 내밀영역과 사적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밀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공인이라도 동의 없이는 보도가 불가능하며 동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영역에 관해서는 동의하면 보도할 수 있고 공인일 경우 동의가 없어도 허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사적영역

에 대한 보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세밀히 접근해야 합니다. 성관계에 관한 보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기 때문에 유명인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관한 보도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아이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실명·학교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도로 인한 언론의 책임 여부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가 좋은 보도인지 여부는 법적 책임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인격권 침해 없는 보도가 언론의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 정 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공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공인의 범주와 관련하여, 국민의 세금을 급여로 받는 사람만을 공인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언론인 중에서도 방송언론인은 공인으로, 신문언론인은 공인이 아닌 쪽으로 -세금을 급여로 받지 않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방송인 중에서도 KBS나 MBC 같은 방송사 직원은 공인으로, 민영방송사나 민영 언론사는 사인 또는 유명인으로 분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前)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와 관련해 아이는 무조건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어리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 혼외자인지 여부였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오랜 시간 관련 논쟁에 휩쓸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공인의 자격을 부여해서 의문점을 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이익에서 ‘공공’의 개념은 무엇인지, 누구의 관점이고 누구의 이익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 재 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인의 범주와 관련한 제안은 일반적 관념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은 국적을 받는 사람이거나 ‘공무원’에서의 공(公)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와 같이 분류한다면 유명인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유명인을 따로 분류해서 공인과 유사하게 취급하거나 공인과 똑같이 취급할지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공인 여부보다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가 더 중요

이번과 같은 세미나 자리에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론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의 아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공적 관심사 해당 여부나 공익성을 고려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으로 해결하는 것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공인으로 보더라도 그 신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공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책임을 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으로 해서 일도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공익성이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박 용 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내밀영역이 아닌 공인의 사적영역은 공개 가능

공인의 혼외자 문제와 관련하여 보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법적으로 깊이 검토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외관계 자체는 성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내밀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외관계의 결과로 자녀가 생겼다면 그 사실 자체로 이미 내밀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그 아들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내밀영역이 아니고 사적 영역이나 사회적 영역에 진입한다는 독일의 판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유명 여자 테니스선수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역시 유명한 재력가라는 추측이 있어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테니스선수의 남자친구가 아버지라고 지칭된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독일 법원은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자체는 내밀영역에 속하므로 보도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독일에서의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 또는 미국에서의 전면적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검찰총장에 대한 보도는 극히 내밀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 보호의 문제가 남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의 중요성이 평가의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수인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장 진 훈 (서울제2중재부 중재부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저의 의견을 개진해보겠습니다. 만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검찰총장이 아니고 다른 정부부처의 차관 정도나 대기업 총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혼외자가 있는 경우,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도 사적인 영역으로서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 철 운 (미디어오늘 기자)

우선, 2009년 11월 19일자 조선일보 칼럼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사생활의 문제가 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공적 이슈인가라는 점이다. 공직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공직자라도 사생활의 문제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이슈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이라 배웠습니다. 결국, 관건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여부인 것 같습니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에 따라 사생활 보도가 정당한지, 위법한지 결정됩니다. 문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갖는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인데 그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고 합리적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박 용 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판단의 주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여부는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평균적인 일반인의 시각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적인 판단 권한은 판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건의 경우, 다섯 명의 중재위원들이 있습니다. 중재위원들은 조정대상 보도가 평균적인 대중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지 합의를 통해 결론 내리게 됩니다.

◆ 유 제 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공공성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불가피성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익성(혹은 공공성)’과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요구합니다. ‘공익성’ 요건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면 일단 공공의 관심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정 조직 내 사람들만의 중요 관심사라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특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문제나 아파트단지 관리문제처럼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지라도 해당 지역 내 사람들에게 중대한 관심사라고 한다면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도의 대상, 주제, 방법 등에 대한 언론인들의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언론인들께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언론분쟁의 특성상 사후적 판단에 그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 상 우 (JTBC 보도부국장)

공인 주변 인물의 초상권 문제

공인이나 공적 인물 관련 보도 시, 공인의 주변 인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인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공인의 보좌관이라든가 공인의 아들 같은 사람이 뜻하지 않게 찍혔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공인과 공인의 주변 인물은 공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취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판단기준의 모호함

다음으로,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묵시적 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입구나 법원·검찰청 현관에서 많은 취재 기자들이 촬영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그 장소에 걸어 들어옴으로써 촬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기자들은 간주합니다. 이처럼 그 취재물을 오락 프로라든가 당사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데 이런 저의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조정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절차의 본질상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강조하다보니 중재부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중재부가 언론사의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명백히 잘못이 있으면 중재부에서 그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중재부가 권위를 가지고 적절한 해석과 판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와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김 재 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공인의 주변 인물은 원칙적으로 공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인격을 갖기 때문에 공인의 자녀라고 하여 당연히 공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관련 묵시적 동의 판단의 어려움

묵시적 동의 문제는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독일의 판결을 소개하면, 어떤 배우가 공항에서 찍힌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출이 심한 장면이어서 배우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법원은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자가 사진을 찍으려는 것을 보고 배우가 살짝 웃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배우가 기자를 보고 웃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기자들 곁을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각 사안에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 유 제 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동의를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동의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뒤로 누군가 지나갔든지 스튜디오에 방청하러 왔는데 촬영된 경우입니다. 방청 중에 촬영될 수 있다는 것은 TV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도는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동의 인정은 신중해야

그러나 다른 사람을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찍혔다는 것은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데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초

상권이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이라면 충돌 과정에서 이익형량을 정확히 해야 하겠지만 어떤 장면을 찍는가가 핵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초상권과 언론의 자유가 대칭적으로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 용 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조정심리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재부는 피해자 측이나 언론사,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절차진행에 관하여 중재부장은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심리에 관해서 중재부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심리 전과 후에 그 사안에 관해서 중재부의 위원들과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점과 관련해서는 향후 각 중재부에서 재차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임 동 수 (MBN 사회2부 부장)

중재부 구성에 관한 새로운 제안

앞선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저도 중재부가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가능한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려는 뜻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정결과에 대해 언론사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의신청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중재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권위 있는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참여조정·중재를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 박 용 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현재 중재부는 다섯 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현직 부장 판사가 중재부장을 맡고, 언론계 출신이나 법조계, 학계에서 덕망 있는 분들이 중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넓은 의미에서 국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특정 전문 사안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언론중재실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 의 선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이상으로 201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교수님과 네 명의 지정토론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